애리조나 법안 2001 (2016개정안) 챕터 6

애리조나 주 하원 통과

52번째 법안 두번째 정식 세션

섹션13-1425를 수정, 성범죄 관련 애리조나주 수정 헌법

13-1425: 나체 혹은 특정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의 불법적 배부 ; 정의

1. 개인이 이미지 혹은 그와 관련한 설명문을 통해 이미지에 드러난 타인의 정체성이 식별 가능한, 다음과 같은 타인의 이미지를 목적을 가지고 폭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미지에 드러난 개인이 나체 상태이거나 특정 성적 행위를 하고 있을 경우.
3. 이미지에 드러난 개인이 사생활을 보장 받으리라 합리적으로 기대 하는 경우

(개인이 전자기기를 통해 타인에게 해당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에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을 보장 받으리라 합리적으로 기대하지않는다고 할 수 없다.)

1. 이미지가 이미지에 드러난 타인을 해하고 희롱하고 위협하거나 협박 또는 강제하기 위해 폭로된 경우.

B. 이 섹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불법행위에의 제보

2. 합법적 이고 보편적인 법적 기관의 행위, 범죄의 제보, 법 절차, 의학적 치료

3. 상업적 상황에서의 자발적 노출

4. 상호 소통이 가능한 컴퓨터 기기 (47연방법 섹션230(f)(2) 에 정의된 대로) 혹은 정보 서비스 (47 연방법 섹션 153에 정의 된 대로) 다른 단체에 의해 전면적으로 제공 된 경우

5. 이미지에 드러난 사람의 동의를 받은 폭로

C. 본 법안의 위반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급 중범죄로 분류한다

1. 이미지가 전자기기를 통해 폭로될 경우 4급 중범죄로 분류한다

2. 개인이 타인의 이미지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으나 유포하지않은 경우 1급 경범죄로 분류한다.

D. 본법안에서의

1. “폭로” 는 전시, 유포,출판,광고 혹은 제안을 포함한다

2. “전자기기를 통한 폭로”는 이메일 전송, 모바일 기기, 타블렛 등 전자기기를 포함하며, 웹사이트를 통한 게재 또한 이해 포함된다.

3. “위해”는 신체적 상해, 금전적 상해, 심각한 감정적 스트레스 유발을 포함한다.

4. “이미지”는 사진, 비디오, 영화, 비디오 테입 혹은 디지털 기록물을 포함한다.

5. “합리적인 프라이버시에의 기대” 는 개인의 기대가 합리적이며 그 기대를 표현 하는 것 을 말한다.

6. ”특정 성적 행위” 의 의미는 는 섹션11-811 서브디비전 D 18문단 서브디비전 a/b에 명명된 바 와 같다.

7. “나체상태” 는 섹션110811 서브섹션 D14문단 서브디비전 a에 명명 된 바 와 같다.

섹션2. 적용성

섹션3. 응급대처

본 법안은 공공의 평화, 건강과 안전의 보전을 위해 긴급 발의 되었으며 즉시 시행 가능하다.

2016년1월13일 긴급사항으로 하원 통과

2016년 3월7일 긴급사항으로 상원 통과

2016년 3월 11일 주지사 승인

2016년 3월 11일 애리조나주 사무실에 문서화.